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

I.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최종 예산 (380만원) 대비 3.8% 증액된 390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3,752	3,752	3,895	143	143	3.8	3.8
세외수입	3,752	3,752	3,895	143	143	3.8	3.8
경상적세외수입	36	36	45	9	9	25.0	25.0
이자수입	36	36	45	9	9	25.0	25.0
임시적세외수입	3,716	3,716	3,850	134	134	3.6	3.6
기타수입	3,716	3,716	3,850	134	134	3.6	3.6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3,752	3,752	3,895	143	143	3.8	3.8
경상적세외수입	36	36	45	9	9	25.0	25.0
이자수입	36	36	45	9	9	25.0	25.0
기타이자수입	36	36	45	9	9	25.0	25.0
임시적세외수입	3,716	3,716	3,850	134	134	3.6	3.6
기타수입	3,716	3,716	3,850	134	134	3.6	3.6
그외수입	3,716	3,716	3,850	134	134	3.6	3.6

2. 세출예산

-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은 13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15억 6천 2백만원) 대비 13.1% 감액된 수준임.

(단위: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1,562,480	1,562,480	1,356,653	△205,827	△205,827	-13.1%	-13.1%	
행정관리	소 계	1,562,480	1,562,480	1,356,653	△205,827	△205,827	-13.1%	-13.1%
	행정운영경비	52,762	52,762	56,692	3,930	3,930	7.5%	7.5%
	재무활동	-	-	-	-	-	-	-
	사업비	1,509,718	1,509,718	1,299,961	△209,757	△209,757	-13.9%	-13.9%
교 부 금								

- 2021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0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백만원)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0 예산		2021 예산	2020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1,562	1,562	1,357	△205	△205	-13.1%	-13.1%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1,510	1,510	1,300	△210	△210	-13.9%	-13.9%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1,510	1,510	1,300	△210	△210	-13.9%	-13.9%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27	227	176	△51	△51	-22.9%	-22.9%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8	68	60	△8	△8	-11.8%	-11.8%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운영	52	52	52	-	-	-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390	390	389	△1	△1	-0.3%	-0.3%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129	129	63	△66	△66	-51.2%	-51.2%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84	184	157	△27	△27	-14.7%	-14.7%
인권 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	68	68	55	△13	△13	-19.1%	-19.1%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2	32	152	120	120	375.0%	375.0%
서울 인권 콘퍼런스	272	272	111	△161	△161	-59.0%	-59.0%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8	18	18	-	-	-	-
인권영향평가 제도 운영	70	70	67	△3	△3	-4.3%	-4.3%

II.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예산

- 2021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은 2020년도 최종 예산 대비 3.8% 증액된 390만원임.

1) 경상적 세외수입

- 2021년도 인권담당관의 경상적 세외수입은 서울시가 교부한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지원단체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반납 수입(53,000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이자수입’의 경우는 매년 세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상적 수입으로 매년 수납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편성하지 않다가 2020년에는 세입 예산(45천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발생가능한 세입 추계를 반영한 적정 세입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예산안〉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	-	-	37	-	44	36	53	53	45

② 2021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1년 전망액 : 45천원
- 산출내역 : 보조금 지원단체(10개 이상)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금액과 집행시기에 따라 이자액이 달리 결정되므로 매년 징수액 편차가 발생하여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 간 보조금 이자 반환 금액의 평균치를 2021년 징수전망액으로 산출하였음
→ (37천원 + 44천원 + 53천원) ÷ 3년 = 45천원

구 분	2018	2019	2020(예상)
보조금 이자	37천원	44천원	53천원

2) 임시적 세외수입

- 2021년도 인권담당관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인권담당관 보조금 지원 사업 정산검사 후 보조금 집행잔액, 부당집행 반납금(38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인권담당관은 2020년 ‘그외수입’의 예산편성(371만원) 대비 결산 전망(135만원)금액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바, 2021년 세입 편성 예산(385만원)이 적정한 세입 예산 편성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연도별 예산결산 내역 및 예산안〉

(단위 : 천원)

2017		2018		2019		2020			2021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5월)	결산전망	
-	1,001	30	-	4,560	2,086	3,716	5,069	5,069	3,850

② 2021년 추계액 및 산출내역

- 2021년 전망액 : 3,850천원
- 산출내역 : 보조금 지원단체(10개 이상)의 집행실적에 따라 징수액이 결정되므로 매년 징수액 편차가 발생하여 예측이 어려워, 최근 3년 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금액의 평균치를 2021년 징수전망액으로 산출하였음

$$\rightarrow (4,396\text{천원} + 2,086\text{천원} + 5,069\text{천원}) \div 3\text{년} = 3,850\text{천원}$$

구 분	2018	2019	2020(예상)
보조금 반환금	4,396천원	2,086천원	5,069천원

※ 2019년 이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시도비 반환금 수입(224-04)으로 결산처리 되었으나, 시도비 반환금 수입은 ‘시도에서 시군구에 보조한 보조금 중 반환받은 금액’이므로 2019년 부터 그외수입(224-07)으로 처리함

2. 세출예산 검토

- 인권담당관 소관 2021년 세출예산은 13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15억 6천 2백만원) 대비 13.1% 감액된 수준임.

가. 증액·감액 사업 현황

- 인권담당관 소관 20% 이상 주요 증액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업이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증액사업 현황(20%)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0년도	2021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1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32,000	152,000	120,000	375.0	2019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검사 시정권고에 따라 지원단체 및 예산 확대

- 인권담당관 소관 20%이상 주요 감액사업은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 총3개 사업을 감액하려는 것임.

〈 주요 감액사업 현황(20%)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0년도	2021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1	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227,300	175,693	△51,607	-22.9	인권단체 보조금 축소
2	인권정책 홍보 및 인권문화행사 개최	129,000	62,800	△66,200	-51.2	인권문화행사 및 홍보자료제작 규모 축소
3	서울 인권 콘퍼런스	271,600	111,280	△160,320	-59.0	격년마다 콘퍼런스 확대/축소 개최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증액)

- 동 사업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하는 단체를 지원하고자 전년과 동일한 3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32,000	32,000	152,000	120,000	375
사무관리비	2,000	2,000	2,000	0	0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0	30,000	150,000	120,000	400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2,000,000원 = 2,000천원	○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2,000,000원 = 2,000천원
	증감사유	
	증감내역 없음	
민간경상사업보조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 30,000,000원*1개 단체 = 30,000천원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 30,000,000원*5개 단체 = 150,000천원
	증감사유	
	시의회 및 결산 감사 시정권고에 따라 지원 단체 수 및 예산 확대	

- 동 사업의 지원대상은 관련 법령(「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인권담당관에서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에 사업비(보조금)를 지원하고 있음.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 등) 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동 사업의 지원단체는 서울시 공모 절차와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고 있으나, 2007년도부터 1개 단체(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만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바, 특정 단체에만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시의회의 지적과 개선에 따라 서울시 소재 5개 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 다만, 동 사업 예산 편성에 따라 5개 센터로 확대되는 바, 보조금 지급에 대한 인권담당관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서울시 소재 5개 센터 현황〉

센터명	자치구명	센터명	자치구명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6개구)	소계	남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5개구)	소계
	종로		양천구
	중구		강서구
	동작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서초구		영등포구
	강남구		
동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개구)	소계	북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6개구)	소계
	성동구		동대문구
	광진구		성북구
	송파구		중랑구
강동구	강북구		
	도봉구		
서부범죄피해자 지원센터 (4개구)	소계	노원구	
	용산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심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바,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2015년~2020년 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언제까지 지원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다른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 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한편, 범죄피해자 구조를 위한 사업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2016년 640만원→ 2017년 169만원→2018년 81만원→2019년 89만원)하고 있는 바, 사업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과 보조금 정산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6	37,600	0	0	37,600	31,193	0	6,407
2017	32,600	0	0	32,600	30,905	0	1,695
2018	32,000	0	0	32,000	31,187	0	813
2019	32,000	0	0	32,000	31,105	0	895

다.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 본 사업은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실천을 위해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의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0.3%(80만원) 감액한 3억 8천 9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389,588	389,588	388,788	△800	0
사무관리비	381,588	381,588	381,588	0	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	8,000	7,200	△800	△10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선정위원회 운영 1,200천원*4회 = 4,800천원	○ 선정위원회 운영 1,200천원*4회 = 4,800천원
	○ 자문회의 운영 750천원*8회 = 6,000천원	○ 자문회의 운영 750천원*8회 = 6,000천원
	○ 서울인권아카데미(인권교육) = 215,020천원	○ 서울인권아카데미(인권교육) = 215,020천원
	- 4급이상 교육 2,800천원 = 2,800천원	- 4급이상 교육 2,800천원 = 2,800천원
	- 위탁복지시설장 교육 2,800천원 = 2,800천원	- 위탁복지시설장 교육 2,800천원 = 2,800천원
	- 본청 교육 30,800천원 = 30,800천원	- 본청 교육 30,800천원 = 30,800천원
	- 사업소 교육 48,400천원 = 48,400천원	- 사업소 교육 48,400천원 = 48,400천원
	- 투자출연기관 교육 14,960천원 = 14,960천원	- 투자출연기관 교육 14,960천원 = 14,960천원
	-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비 등 44,000천원*1식 = 44,000천원	-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비 등 44,000천원*1식 = 44,000천원
	- 교육운영비(인쇄비, 문구류 등) 71,260천원*1식 = 71,260천원	- 교육운영비(인쇄비, 문구류 등) 71,260천원*1식 = 71,260천원
	○ 인권강사양성 = 60,600천원	○ 인권강사양성 = 60,600천원
	- 기본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기본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심화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심화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보수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보수과정 20,200천원 = 20,200천원
	○ 교육 모니터링 = 29,669천원	○ 교육 모니터링 = 29,669천원
	- 모니터링 전문 업체 용역비 16,669천원 = 16,669천원	- 모니터링 전문 업체 용역비 16,669천원 = 16,669천원
	- 전문가평가단 운영 13,000천원	- 전문가평가단 운영 13,000천원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 13,000천원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용역비 = 65,500천원	= 13,000천원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용역비 = 65,500천원
	증감사유	
	증감내역 없음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00원 = 8,0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200,000원 = 7,200천원
	증감사유	
	실국별 한도 조정 △800천원	

- 서울시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1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동일한 주제로 교육의 관심 하락이 지적되고 있는 바, 인권에도 다양한 주제가 존재하므로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 따라 인권교육 이수율이 저조하고, 교육 횟수도 감소하였음에도, 2020년과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은 면밀한 추계 없이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최근 3년간 인권교육 운영 현황〉

2018년도	○ 인권교육 218회 실시 - 4급이상 5회, 본청 75회, 사업소 105회, 출자출연기관 30회, 복지시설장 3회
2019년도	○ 인권교육 222회 실시 - 4급이상 5회, 본청 70회, 사업소 110회, 투자출연기관 34회, 복지시설장 3회
2020년도	○ 인권교육 이수율 60%

- 한편, 인권교육을 특정기관(인권정책연구소)에서만 수행하고 있는 바, 다양한 교육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여 서울시 및 출연·출자 기관에 부합하고 적합한 주제로 전문화된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추진 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년 도	횟 수	기 관
합 계	705회	
2020	60회	인권정책연구소('20.10월말 기준)
2019	222회	인권정책연구소
2018	218회	인권정책연구소
2017	205회	한국정책개발연구원(통합과정) 한국생산성본부(일반과정)

- 한편, 인재개발원에서도 e러닝 인권강의와 성희롱인권, 장애인인권에 대한 집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인권교육의 중복성과 교육의 통합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 및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위해서 인재개발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라.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 본 사업은 강제 철거현장에서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사실확인 및 필요한 조치를 통해 철거민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1천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7,820	17,820	17,820	0	0
사무관리비	17,820	17,820	17,820	0	0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000원 = 17,820천원	○ 철거 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17,820,000원 = 17,820천원
	증감사유	
	증감 내역 없음	

○ 동 사업의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구성은 1개조 4명(인권과·도시재생·자치구·변호사)을 기본으로 하며, 현장의 규모나 투입되는 공권력의 규모, 철거대상의 범위와 특성을 고려하여 조별 단위를 늘려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나, 연도별 운영 횟수가 감소하고 있고,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아 운영상 누수가 발생할 소지는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017년 : 69회 운영(변호사 미참석 6회), 2018년 : 78회 운영(변호사 미참석 17회), 2019년 : 51회 운영(변호사 미참석 3회), 2020년 : 36회 운영(변호사 미참석 16회)

〈인권지킴이단 수당 지급 기준〉

활 동 수 당 지 급 기 준	
활 동 시 간 별	수 당
2시간 이하	100,000원
2시간 초과 ~ 4시간 이하	150,000원
4시간 초과 ~ 6시간 이하	200,000원

※ 「공공변호사 입회제도 운영 개선계획」(재생협력과-8806) 지급기준 적용

○ 또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시, 철거현장에서 몸싸움, 탈의분신, 자해 등 위험한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인권보호를 위해 지원되는 공무원과 변호사들의 안전 대책 및 관련 예산 마련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최근 2년간 집행잔액(2019년 9백만원, 2020년 1천4백만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2021년 예산에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실소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 없이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예산액(예산과목), 집행액, 집행잔액〉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2017년	예산 미 편성으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에서 변호사 활동수당 지급함				
2018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무관리비	16,800	16,467	333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982	18
2019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무관리비	17,820	8,820	9,000
2020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운영	사무관리비	17,820	3,400	14,420

마.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본 사업은 인권 취약분야 및 사각지대 실태파악과 분석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인권정책 발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예산 대비 2천 7백만원 감액한 1억 5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84,000	184,000	157,200	△26,800	△15
사무관리비	184,000	184,000	157,200	△26,800	△15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인권 현안 실태조사 89,750,000원 = 89,750천원 ○ 선정위원회 등 운영	○ 인권 현안 실태조사 60,000,000원 = 60,000천원 ○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4,250,000원 = 4,250천원	7,200,000원 = 7,200천원
	○ 인권정책회의 개최 10,000,000원 = 10,000천원	○ 인권정책회의 개최 8,000,000원 = 8,000천원
	○ (청년자율예산) 청년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 75,000,000원 = 75,000천원	○ 인권정책 기본계획 모니터링 용역 82,000,000원 = 82,000천원
	○ (청년자율예산) 청년 혐오표현 인식 실태조사 선정위원회 등 운영 5,000,000원 = 5,000천원	
	증감사유	
	인권 현안 실태조사 예산 절감 △29,750천원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예산 절감 △2,050천원 청년자율예산 사업 종료 △75,000천원 인권정책회의 개최 예산 절감 △ 2,000천원 인권정책기본계획 모니터링 증82,000천원	

- 인권실태조사는 시민인권 취약부분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파악으로 인권취약 부분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대처하고, 시민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정책 개발에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동 사업중 인권정책회의는 조례상 연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전혀 개최하지 않고 있는 바, 인권정책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인권정책회의의 기능과 역할을 경시하는 인권담당관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7조의2(서울시인권정책회의)

- ④ 정책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정책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⑤ 정책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연도	일시	장소	참석자	점검내용	운영결과
2018	미개최('18년 하반기 개최 예정이었으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당해년도(2018년)로 추진실적 등 상정 안건 미비와 주요 참석대상인 시장의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및 '18년 서울 인권 콘퍼런스 참석, 인권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국장) 사임으로 인한 공석 등으로 인권정책회의 개최 필요성 감소)				
2019	미개최(인권위원회에서 회의주제 선정 후 시장 일정 및 '2019년 서울 인권 콘퍼런스' 행사 일정 감안하여 관련 실·본부·국과 추진 협의 예정이었으나 관계 부서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부재 등 상정안건 미비로 시장의 인권 콘퍼런스 참석으로 대체)				
2020	코로나19 상황 및 시장 부재 감안하여 관련 실·본부·국과 추진 협의				

[예산액(예산과목), 집행액, 집행잔액, 주요성과]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액	예산과목	집행액	집행잔액	주요성과
2018	4,000	인권정책회의 개최	-	-	-
2019	10,000	인권정책회의 개최	-	-	-
2020	10,000	인권정책회의 개최	-	-	-

바.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인권친화적 문화형성과 일상에서 인권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 장소에 대한 공간조성 및 탐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67,650	67,650	54,720	△12,930	△19
사무관리비	64,650	64,650	51,720	△12,930	△20
공공운영비	3,000	3,000	3,000	0	0

〈산출 근거〉

과목구분	2020년 본예산	2021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바닥동판 추가 설치 5,000,000 = 5,000천원	○ 바닥동판(표지석) 추가 설치 4,080,000 = 4,080천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 57,250,000 = 57,250천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 45,800,000 = 45,800천원
	○ 위원회 운영비 2,400,000 = 2,400천원	○ 위원회 운영비 1,840,000 = 1,840천원
증감사유		
바닥동판(표지석) 추가 설치 예산 절감 △920천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예산 절감 △11,450천원 위원회 운영비 예산 절감 △560천원		
공공운영비	○ 바닥동판 유지보수 500,000원*6개 = 3,000천원	○ 바닥동판(표지석) 유지보수 500,000원*6개 = 3,000천원
	증감사유	
	증감내역 없음	

- 동 사업은 민주화(4월길·6월길), 남산(자유길), 사회연대(여성길·시민길), 노동(전태일길·구로길)을 포함한 총 4개 테마를 중심으로 탐방을 운영중에 있으나, 연도별 참여인원수(2017년 1,329명→2018년 1,380명→2019년 917명, 2020년 500명)가 감소하고 있는 바, 감소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체험코스의 다양화 및 실제 집행 가능예산이 감안된 세부 산출기초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개요

-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은 2016년 공무원 대상 시범실시 후, 2017년 첫 시행 되었으며, 현재 3년차 운영 중.
- 실제 탐방을 운영하면서, 현장에서의 여건을 종합하여 코스 변동.

〈인권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실적〉

(단위: 천원)

연도	프로그램명	계획인원 (명)	실참여인원 (명)	운영회차	예산편성액	예산집행액
2017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1,200	1,329	25회	60,400	51,910
2018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1,300	1,380	31회	54,900	49,975
2019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1,300	917	39회	57,150	35,240
2020	서울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1,300	500	22회	67,650	46,450

- 특히, 4개 테마중 구로길 코스는 차도와 인접하여 단체로 체험하기에는 안전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이러한 여건이 예산 집행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요인은 없는지 여부와 코스 개발시 탐방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선 마련 등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